



2 외국인 주민의 주민기본대장제도란

2-1 제도 개요

지금까지 외국인의 주거지 등록은 외국인 등록에 의해 행해졌지만 2012년 7월 9일에 외국인 등록법 폐지 및 주민기본대장법이 개정되어 일본인과 동일하게 주민기본대장에 기재하게 되었습니다. 이에 따라 외국인 주민에게도 주민표가 작성되며 관청에 있어서의 수속이 간단해집니다.

주요한 변경점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일본인과 외국인으로 구성되는 세대의 전원이 기재된 증명서 (주민표의 사본 등) 의 발행이 가능해집니다.
- 주소변경의 신고에 의해 동시에 국민건강보험 등의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.。
-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변경에 있어서 종래 입국관리국과 시정촌 양쪽에 해야 했던 신고가 입국관리국 한 곳만으로 신고가 처리됩니다.
- 전입신고, 전출신고 등 주민기본대장법상의 수속을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가 있습니다.